

# 예 산 총 칙

201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05,057,947	12,151,738
일반회계	391,907,445	11,757,223
특별회계	13,150,502	394,515
기타특별회계	13,150,502	394,515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68,606	17,058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,601,793	48,054
주차장특별회계	7,512,186	225,366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1,305,315	39,159
재정비촉진특별회계	2,162,602	64,87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192,61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,500,000천원으로 한다